

의안번호	2208885
의 퇴 인	정일영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5.
추 계 번호	25F15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사업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－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요건: ①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조한 재화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③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재화 － 공제율: 제품 생산비용의 20%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2	안 제144조의2 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－ 적용기한: 2028.12.31.	
3	안 제144조의3 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미공제 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	
4	안 제144조의4 (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이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5	안 제144조의5 (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환급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4조의2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44조의3(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44조의4(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44조의5(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및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, 제144조의2, 제144조의3, 제144조의4, 제144조의5 신설)
 - 안 제100조의35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(이하 ‘국가전략기술사업’)에서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일정요건에 맞게 생산한 경우, 생산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
-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국가전략기술 활용 재화의 요건:
 -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의해 제조
 - ② 해당 재화의 최종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완료
 -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
- 공제내용: 제품 생산비용의 20%
 - ※ 단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분은 본 공제에서 차감
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20%
- 적용기한: 2035.12.31.
-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,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,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며 10년간 이월공제 허용
 - 개정안은 2028년까지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환급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
 - ※ 단, 환급대상인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- 안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,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
 - 개정안은 2035년까지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 또는 환급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
 - ※ 단, 환급대상인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- 안 제100조의35,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대한 법인세액 및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공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, 생산비용의

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－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청정수소 관련 제품, 미래형 이동·운송수단,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으나, 세부적으로 특정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○ 또한,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의 생산여부, 국내에서의 최초 사용 및 최종공정 완료 등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를 추정할 수 없음

○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동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발생에 따른 환급 및 제3자 양도의 규모 등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□ 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미공제금액 발생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나, 미공제금액 계산방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별 납부세액의 발생 여부, 최저한세 미달 여부 및 이로 인한 미공제금액 규모에 대한 자료는 현재 집계되지 않음

－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적도 2021년 세법개정으로 2022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어 현재 2023년 신고기준 실적(7,432억원)만 가용한 상황

○ 또한,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환급 및 제3자 양도가 허용되는 미공제금액의 계산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미공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